

□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제3조(기능)</p> <p>1.~5. (생략)</p> <p>6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(징계 중인 자를 포함한다)의 징계에 관한 사항</p> <p>가. 체육회 및 관계단체의 임원</p> <p>나.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된 지도자·선수·심판·선수관리담당자</p> <p>다.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된 운동경기부, 스포츠클럽</p> <p>7.~11.(생략)</p>	<p>제3조(기능)</p> <p>1.~5.(현행과 같음)</p> <p>6. 다음 각 목에 대한(징계중인 자를 포함한다) 징계의 결정 및 효력에 관한 사항</p> <p>가. 체육회 및 관계단체의 임원</p> <p>나.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된 지도자·선수·심판·선수관리담당자</p> <p>다.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된 운동경기부, 스포츠클럽</p> <p>7.~11.(현행과 같음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징계가 결정된 이후 효력이 언제 발효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의미 추가
<p>제33조(징계의 의결 및 통보)</p> <p>①~②(생략)</p> <p>③ (없음)</p>	<p>제33조(징계의 의결 및 통보)</p> <p>①~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신설> 체육회는 제1항의 징계에 대하여 이를 즉시 문서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징계의결 고의 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36조 제2항의 이동
<p>제36조(징계의 효력 등)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 해당 단체는 제1항의 징계에 대하여 이를 즉시 문서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징계의결 고의 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.</p> <p>③~④ (생략)</p>	<p>제36조(징계의 효력 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신설> 징계의 취소 결정이나 법원의 무효 판결 등으로 인하여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징계 혐의로 혐의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다시 해야 하는 경우에는 1차 처분일로부터 기산하되, 이미 집행된 징계기간을 산입하여야 한다.</p> <p>③~④ (현행과 같음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33조 제3항으로 이동 • 재징계 상황에서 징계 효과의 중복 적용을 피하면서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취지 반영
<p><신설></p>	<p>부칙(2024. 00. 00.)</p> <p>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